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2030 청년의 시선에서 본 현실과 해법 –

2025년 11월 18일(화)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2030 청년의 시선에서 본 현실과 해법 –

2025.11.18. 연구위원 나경태

- 국민의 79%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0대 이하(39세 이하)’로 인식했고,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는 국민은 18%에 불과해, 과도한 연령 기준 상향은 국민 인식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전 세계에서 49세가 청년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 전체 응답자 : 응답자 중 37%가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인식했으며, 34세 이하(23%)와 30세 이하(19%)를 합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법정 기준인 34세보다 더 넓은 범위로 청년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줌.
- 연령별 : 3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식한 비율은 대체로 30%대에 그쳐, 청년 연령 상한의 과도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성·연령별 : 2030·4050 여성 응답층에서 ‘39세 이하’ 응답 비율이 각각 40%, 42%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청년 연령 상한을 넓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결혼·출산·경력단절 등 생애 이행기를 고려해 청년기를 더 길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
- 지역별 : 서울(29%)과 대구·경북(39%) 간 10%p의 차이는 지역별 청년 연령 인식 격차를 보여주며, 기준 설정 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
- 청년 연령 기준은 현행 만 19~34세를 39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존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래 5가지 보완 장치를 제안함
- 청년 연령 상한을 상향할 경우, 한 번에 5세를 확대하기보다는 2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 청년 연령 상한 49세 확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국 단위 일괄 확대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함
- 청년 정책별 공고와 지침에 ‘핵심 수혜 연령’을 명시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 분산을 방지하며 정책 효과가 필요한 연령대에 집중되도록 유도해야 함
- 기준 연령(예: 34세) 초과자는 예산 여유 시 후순위로 배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연령 확장 시 기존 청년층의 수혜 기회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함
- 연령 기준 확대 시 대상 증가에 비례해 예산도 함께 확대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를 막고 정책 효과를 유지하는 보완책으로 작용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청년 연령 기준의 지역·법령 간 불일치

- 청년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 간 연계가 어렵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적용에 혼란이 생기고 있음. 특히, 상한 연령이 34세, 39세, 45세, 49세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수혜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음¹⁾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청년들이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연령 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의 선별성(selectivity) 약화²⁾

- 연령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청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정책 지원의 핵심 대상이 흐려지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자원이 집중되기 어려워짐. 이로 인해 정책(창업·주거·고용 등)별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청년 중심 원칙에 기반한 기준 제도 정비³⁾

- 본 연구는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간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한 뒤, 현행 「청년기본법」 기준(만 19~34세)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청년 연령 기준의 법과 제도의 현황

□ 「청년기본법」 : 청년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그 한계

-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법률로, 제3조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청년 정책 추진의 법적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통일된 정책 기준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청년 연령 기준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목적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은 예외 조항 때문에 실질적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이며, 이는 정책 목적과 지역 여건, 청년 생애 주기의 다양성 등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 이러한 과도한 자율성으로 인해 상한선

1) 한국대학신문, 「'청년 기준' 제각각…정책 형평성·효율성 우려」, 2024.03.14., <https://naver.me/xXfy4Mw5>.

2) 한국경제, 「청년 기준 49세까지?...“진짜 청년이 소외될 우려”」, 2024.5.13., <https://naver.me/Fe5fU3wH>

3) 한국경제, 「예산 지키려는 꼼수에…19세 아들도 49세 아빠도 '청년'」, 2024.2.08., <https://naver.me/5v9oN3ZV>

이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 법령별 청년 연령 기준 적용 현황⁴⁾

-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이 통일된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 목적과 대상에 맞춰 청년 연령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상한 연령을 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일부 창업·주거 지원 사업에서는 39세 또는,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처럼 동일한 연령대가 어떤 제도에서는 청년으로 포함되고, 다른 제도에서는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청년으로서는 본인이 어떤 정책의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지원 대상 중첩이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표2-1] 정책 목적별 청년 연령 기준 적용 현황

정책 분야	관련 분야	청년 연령 기준
고용·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⁵⁾	3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⁶⁾	34세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⁷⁾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⁸⁾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은 34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⁹⁾	39세 이하
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¹⁰⁾	19세 이상 ~ 39세 이하
정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¹¹⁾	45세 이하

4) 뉴스토마토, 「정부는 ‘청년=만 34세’인데…지자체 40곳 ‘49세까지 청년’」, 2023. 10. 29., <https://naver.me/FNTqFuN4>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각종 인건비·훈련비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 다만,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고용 의무 대상은 34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특정 조항에서만 39세 이하.

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행복주택 등 청년 입주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자문위원 중 청년은 45세 이하로 정의, 전체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 현황¹²⁾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령 확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세종시가 39세, 경기도는 34세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9세까지 확대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청년 상한을 49세로 설정한 기초자치단체는 40곳에 달함¹³⁾
- 이처럼 지역 간 차이는 거주지에 따라 정책 수혜 자격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일부 지자체는 사업별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정책 대상 선정이 모호해지고 행정적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음

[표2-2] 지자체별 청년 연령 기준 상한(2025년 7월 현황)¹⁴⁾

	연령상한	광역단체	기초단체
1	34세 이하	0개	9개(4%)
2	39세 이하	15개	130개(57.5%)
3	45세 이하	2개	47개(20.8%)
4	49세 이하	0개	40개(17.7%)

□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연령 49세 적용 기초단체 현황¹⁵⁾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함.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가운데 28개 기초자치단체(약 31.5%)는 청년 연령 상한을 만 49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간·농촌·도서·접경지역에 해당함
-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40대가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청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 중심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기능적 청

12) 뉴시스,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달라…정부는 34세·지자체는 최대 49세", 2023.10.29., <https://naver.me/53YksRwr>

13) 베이비뉴스,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 '청년이요? 마흔 넘어도 가능합니다'", 2025.4.23., <https://naver.me/F5lyXYhJ>

14)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제2024-05호, 2024.2.22.

15)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021.10., <https://mois.go.kr/p/RK6h>

년(Functional Youth)' 개념이 적용됨¹⁶⁾

- 실제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실증분석 결과, 청년 대상 사업이 많을수록 지역 내 청년 체류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됨¹⁷⁾

[표2-3] 인구감소지역 중 청년 연령 49세 현황(2025년 7월 23일)¹⁸⁾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	기초단체
인천	1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8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5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1	서천군
전북	4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2	고흥군, 신안군
경북	2	봉화군, 울릉군
경남	3	하동군, 함양군, 함안군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청년 연령

- UN과 OECD 등 국제기구는 청년을 대체로 15세에서 29세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청년 정책 집행 시 보통 20~30대 초반까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청년의 연령 상한을 49세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사례는 사실상 한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함.

- 유엔(UN) 15~24세¹⁹⁾, OECD 15~29세²⁰⁾, 유럽연합(EU) 15~29세²¹⁾, 미국 16~24세²²⁾, 영국 16~24세²³⁾, 일본 15~34세²⁴⁾, 캐나다 15~29세²⁵⁾, 호주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p. 67.

17) 임태경,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18)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2024-05호, 2024.2.22.

1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Youth FAQs: Definition of Youth", [20\)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https://www.oecd.org/society-at-a-glance-2016.pdf>\(검색일: 2025. 11. 20\)](https://undesadspd.org>Youth/FAQs.aspx(검색일: 2025. 11. 19.)</p></div><div data-bbox=)

21) European Commission, "Statistics on young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15?29 years)", <https://ec.europa.eu/eurostat/children-youth> (검색일: 2025. 11. 20)

2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isconnected Youth: A Look at 16- to 24-Year Olds Who Are Not Working or In School (Report R40535), 2015.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R/PDF/R40535/R40535.10.pdf (검색일: 2025. 11. 20)

23) UK Government / DWP, "Youth Offer: process evalu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youth-offer-process-evaluation/youth-offer-process-evaluation>(검색일: 2025. 11. 20)

24) OECD, "Investing in Youth: Japan",

- 이처럼 국제 기준과 크게 다른 연령 확대는 국민이 기대하는 상식적 기준과 어긋나며, 2030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연령 설정은 청년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음

3.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문제점

□ 법령 및 통계 기준의 불일치와 행정 비효율²⁷⁾

-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서는 상한을 39세, 45세, 심지어 49세까지 확대하고 있음
- 이처럼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책마다 적용 대상이 달라지고 통계 작성이나 정책 효과 분석의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대상자 선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해, 중복 지원이나 정책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청년층 내 형평성 및 세대 갈등 우려²⁸⁾

-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한 20대 초·중반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오히려 일정한 기반을 갖춘 30대 중후반 청년층에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예를 들어, 창업지원금이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은 일정 수준의 소득, 신용,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직장 경험이나 자산이 있는 30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함
 - 반면, 아직 학업 중이거나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초반 청년은 정책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큼
- 또한, 연령 기준이 상향될수록 정책 수혜를 둘러싼 ‘역차별’(전세대출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7/05/investing-in-youth-japan_g1g7a8e0/9789264275898-en.pdf(검색일: 2025. 11. 20)

25) Canadian Heritage. Canada's First State of Youth Report (2021).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ampaigns/state-youth/report.html>(검색일: 2025. 11. 20)

2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Young people's health in Australia: Ages 15?24 years, 2024,<https://www.health.gov.au/topics/young-peoples-health/about>(검색일: 2025. 11. 20)

27) 박정민·최영훈, 「청년연령에 대한 경쟁관점과 새로운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3호, 2023, pp. 201-203.

28) 김효은, 「청년 정책 대상의 재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년의 범위, 대상 설정과 정책 형평성」, 『청년연구』, 제8권 제2호, 2022, pp. 75-77.

신청 기준 차이 등) 인식이 생기고 청년층 내부의 세대 갈등이나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청년 정책 목적성의 혼선²⁹⁾

- 나아가 연령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누가 청년인가’에 대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정책 대상의 정체성도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청년 정책은 본래 교육·취업 등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초기 청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 출산, 자립 등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며 30~40대까지 확장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하나의 청년 범주 내에 삶의 단계가 다른 집단이 한곳에 섞이면서 정책 설계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 결과,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정책별 지역 간 기준 편차³⁰⁾

-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이 달라, 최저 만 34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동일한 중앙 정책을 적용할 경우 수혜 대상이 지역마다 다름

□ 사회적 인식과 정책 기준의 차이³¹⁾

- 청년 연령 기준이 제도적으로 상향되는 흐름 속에서, 국민 인식 또한 과거 보다 확장되어 30대 중후반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만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포함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존재하며, 이는 청년 정책의 현실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4.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³²⁾

□ 전체 응답자 : 법적 기준과 국민 인식 간의 뚜렷한 차이

29) 조계원,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합적 정책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23-05』, 2023, pp. 42-44.

30)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기본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6, pp. 18-20.

31) 한국행정연구원, 「국민 인식 기반 청년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3.12, pp. 22-23.

32) 여의도연구원, 「청년 연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 문항: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나이 상한은?’, 조사 기간: 2025년 3월 24~25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 조사 방법: 무선 RDD 기반 ARS 방식, 표본오차: ±3.06%p(95% 신뢰수준), 구분 항목: 성별, 연령대 등.

- 청년의 연령 상한에 대한 응답 결과는 ‘30세 이하’ 19%, ‘34세 이하’ 23%, ‘39세 이하’ 37%, ‘44세 이하’ 13%, ‘49세 이하’ 5%로 나타남
- 이는 법정 기준인 만 34세보다 더 넓은 범위로 청년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임
- 특히 ‘39세 이하’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30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 응답자는 전체의 약 79%에 달함. 이는 국민 다수가 30대는 청년으로 인식하지만, 40세 이상은 청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줌

□ 연령별 특징

- 20대는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식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아, 기준 「청년기본법」 기준에 가장 잘 공감하는 세대로 해석됨
- 30대는 ‘39세 이하’를 선택한 비율이 45%로 전체 세대 중 가장 높아, 청년 연령 상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세대로 볼 수 있음
- 40대는 39세 이하 응답 비율이 32%, ‘30세 이하’는 22%로, 청년 범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좁은 인식을 보이며, 30대와의 경계에서 인식이 엇갈리는 특징을 나타냄
- 50대와 60대는 각각 81%가 ‘30~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식했으며, 연령별 인식 비율 분포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종합해보면 30대를 제외한 세대들은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 비율이 30%대 초중반에 그쳐, 확장된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20대: 87% (30세 20% + 34세 34% + 39세 33%)
 - 30대: 82% (30세 12% + 34세 25% + 39세 45%)
 - 40대: 71% (30세 22% + 34세 17% + 39세 32%)
 - 50대: 81% (30세 22% + 34세 22% + 39세 37%)
 - 60대: 81% (30세 20% + 34세 22% + 39세 38%)
- ※ 또한, 청년재단의 2023년 조사³³⁾에 따르면, 청년 상한 연령에 대한 국민 인식의 평균은 35.8세로 나타남. 이는 30대 중후반까지 청년으로 보는 인식은 존재하지만, 40세 이상은 여전히 청년 범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줌

33) 청년재단, 「2023 청년 인식조사 결과」, 청년재단, 2023.5., <https://bit.ly/3zRJyoU>.

□ 성·연령별 특징

-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식한 비율은 여성 39%, 남성 34%로, 여성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2030 여성과 4050 여성에서 각각 40%,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법정 기준인 만 34세보다 청년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 이는 결혼, 출산, 경력단절 등 생애 이행기를 고려해, 여성 응답층이 청년기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³⁴⁾

□ 지역별 특징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은 75%로 수도권(66%)보다 9%p 높게 나타나, 청년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 특히 서울(29%)과 대구·경북(39%) 간에는 10%p의 차이가 나타나, 지역별 청년 인식 기준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
- 이는 지역마다 정책 여건과 인구 특성이 다른 만큼, 경직된 연령 기준보다 탄력적인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줌

5. 개선 방안

□ 現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의 예산과 지원, 혜택을 유지

- 19~34세는 현행 법적 기준으로서 청년 정책의 주요 기반이지만, 국민 인식은 이보다 다소 넓은 범위(예: 39세 이하)를 포함하는 경향도 있음
- 다수 응답자는 39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청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 따라서, 청년 정책은 현행 기준(19~34세)을 중심으로 유지하되, 이 연령대가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상한 연령을 조정할 경우, 한 번에 5세씩 확대 하기보다는 2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34) 김영미·권현지,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과 자녀계획에 관한 연구: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p. 45.

□ 청년 연령 상한 49세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 적용

-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에 일괄 적용할 경우, 기존 청년층의 기회 축소, 정책 효과 분산, 수혜 형평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 특례 조항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이는 지역 맞춤형 탄력 운영 원칙에 부합하며, 중앙 기준과 지역 수요를 조화시키는 제도적 절충안이 될 수 있음

□ 정책별 ‘핵심 수혜 연령’ 명시로 우선순위 설정

- 연령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를 방지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이 더욱 필요한 계층에 집중될 수 있고, 연령 확대에 따른 자원 분산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음

□ 기존 청년층 보호를 위한 후순위 제도 도입

- 기준 연령(예: 34세)을 초과한 신청자는 예산 여유가 있을 때만 후순위로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청년 주거 지원, 창업자금, 고용 프로그램 등에서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기존 청년층의 수혜 기회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 연령 확대 시 예산 확대 연동 원칙 마련

- 연령 기준을 확대할 경우, 수혜 대상 증가에 따라 예산도 함께 늘려야 하며, 기존 청년층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정적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연령 기준 확대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충을 전제로 추진 되어야 함